



2005

#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2005. 3. 11

##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프로그램 순서

### ■ 개회 및 인사말

- 14:30 ~ 15:00                    입장 및 자료배부
- 15:00                                개회
- 15:00 ~ 15:05                    위원장 인사말

※ 참석자(위원회 및 단체) 소개는 해당 정책분야별로 실시

### ■ < 1부 > : 2005년 업무추진계획 설명

- 15:05 ~ 15:30                    • 200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질의 및 응답

### ■ < 2부 > : 분야별 정책간담회

- 15:40 ~ 17:00    인권정책 분야    • 인권위법 개정  
  (배움터 1)        【세션1】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인권상황 실태조사
- 15:40 ~ 17:00    차별조사 분야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배움터 2)        【세션2】        • 차별사안 발굴방안
- 17:00 ~            인권침해        •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배움터 1)        조사 분야        【세션3】
- 17:00 ~            교육협력 분야    • 인권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사업  
  (배움터 2)        【세션4】        • 2기 인권교육 추진방향

# 차 례

<b>I . 2005년도 업무계획 기본방향</b> .....	1
<b>II .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b> .....	2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2
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권고 .....	4
③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	5
④ 인권취약분야 상담·조사·구제 활동 강화 .....	8
⑤ 국내외 인권단체·기구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	9
⑥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체계화 .....	10
<b>III . 주요 정책과제 논의자료</b>	
① 인권정책 분야 .....	11
② 차별조사 분야 .....	31
③ 인권침해조사 분야 .....	33
④ 교육협력 분야 .....	37

# 2005년도 업무계획

## I. 기본방향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현장·예방중심 인권보호활동

### 추진전략

-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에 따른 업무 시스템 구축
- ◇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 현장 및 지역 인권활동 강화
- ◇ 적극적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차별시정

### 중점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권고
3.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4. 인권취약분야 상담·조사·구제 활동 강화
5. 국내외 인권단체·기구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6.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체계화

## II. 주요 업무추진 계획

###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최재천 의원(안) 등 5개의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중
  - 최재천 의원(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지방사무소 설치, 퇴직 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규정 삭제 등 관련 규정 개정
    - ※ 유선호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은 최재천 의원(안)에 이미 반영
  - 김애실 의원(안)은 위원회에 ‘성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인권위원 남녀구성비의 10분의 6 초과금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이은영 의원(안)은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를 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
- 여성부 등 정부의 차별시정기구를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개정(안) 국회제출(‘05.2월)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인권위법 개정과 동시에 개폐절차 진행(‘05.3.2 국회 통과)
  - ※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부에서 개정 검토중
- 4월 개최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하여 심의 예정
  - 6개의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개진

##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개정
  - 시설 방문조사, 진정함의 설치·운용 규정 개정 등
- 사무처 조직개편을 위한 직제령 개정
- 위원회 규칙 제·개정
  -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체제 개편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업무 인수인계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정사건 등 관련 업무 인수
  - 예산 및 인력 등 협의
- 위원위촉 및 인력충원
  - 조정위원, 전문위원 등 위원 위촉, 사무처 인원 충원 등
- 기타 사무실 확보, 예산 조치 등

## 3. 지방사무소 설치

-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적시성 있는 인권상담 및 구제, 인권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 부산, 광주에 설치(총 12명), 상반기중 개청 예정
- 직제령 개정으로 설치 가능(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

## 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권고

### □ 추진배경 및 방향

- '93 Vienna 세계인권대회에서 각국에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은 한국 정부에 '06년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권고
- 우리 위원회는 2007~2011년까지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작성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소수자(차별), 인권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및 국제적 활동 등 영역별 정책과제 제시

### □ 추진일정

- 영역별 기초현황조사 마무리(1월)
- 권고안 초안 작성(4월)
-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3~5월)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한 관련 정부부처 협의(4~5월)
- 전원위원회 상정(6월)
- 권고(상반기)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7월 이후

### 3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현안에 적극 대응

-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
  - 아동·여성·노인·농민·도시빈민·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단계적 권고안 마련 예정
- 사회권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역량 집중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차상위 계층 미학령기 아동의 보육현황 실태조사 등
  - 사회권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발굴

#### 2. 군대내 인권개선

- 군 사법제도 개선
  - 2003년도에 실시한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군사법원제도의 개선, 군검찰의 독립성 등
- 군 관련 조사권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군대에 대한 방문조사 근거 마련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 등
- 인권교육 강화
  -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군내부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3. 북한인권 연구

- 자료수집·분석 및 국내외 의견수렴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국내외 동향 파악(연중)
  - 재외 탈북자(중국, 동남아 등) 및 탈북자 국내 정착 실태조사
  -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청문회 실시(총 4회 예정)
  - 유엔 등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회의 개최 등
-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자문
  - 탈북자 인권실태, 탈북자 인권정책 등
-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기본입장 수립
-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방안 마련(연내 권고 추진)

### 4. 사형제도

- 사형은 형사정책의 중요한 쟁점인 동시에 위원회가 10대 인권 현안 과제의 하나로 새 정부에 제시
- 2003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권고안 마련(3~4월)

### 5. 비정규직

- 현재 국회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등 2개의 비정규직관련 법안 검토 후 의견표명 추진
  - 청문회 개최 등 의견수렴(3월)

### 6. 차별금지법

-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초안 마련
- 초안에 대하여 간담회,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추진

## 7. 정보인권

-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운영실태 등 정보인권관련 인권침해소지가 인정되는 경우 정책 개선 권고

## 8. 양심적 병역거부

- 국내외 동향 및 현황 파악과 함께 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대한 검토 후 청문회/토론회를 거쳐 권고안 마련(상반기)

## 9. 한센인 인권개선

- 한센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정책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시정 추진
  - 실태조사,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등을 통한 인권 및 차별실태 검토 분석
  - 한센인 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 간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한센병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한센인 홍보 콘텐츠 및 매체 개발 및 보급
- 한센인 인권개선 방안 마련(연내 권고 추진)

## 4 인권취약분야 조사·구제활동 강화

### 1. 직권조사 활성화

- 접수된 진정사건 처리 위주의 조사방식을 탈피하여 능동적인 인권 현안 발굴·조사시스템 구축
  - 인권침해 예방 및 국민 인권의식 전환의 계기로 활용
-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및 조사 우선순위 선정
  -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태파악 우선

### 2. 인권취약 시설 방문조사 강화

- 다수인보호시설
  - 지역별 정신과 시설의 입·퇴원관리, 격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조치
  -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권고
- 군대
  - 구타, 가혹행위 등이 빈발하나 지휘체계에 따른 상명하복 구조로 진정제기 곤란
  - 직권조사 등을 활용한 조사·구제 강화

###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 지역주민의 소외감 및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인권순회상담 실시
- 지역변호사회,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권상담, 인권교육 등 실시

## 5] 국내외 인권단체 · 기구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 1. 국내 인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위원회 주요사업을 인권단체에 설명 및 인권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 국가 보조금사업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실천 인권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실시
- 인권취약현장 방문 활성화 및 단체활동가 전문성 제고
  - 사회적 소외자 · 약자(빈민, 노인, 아동, 장애인 등)들에 대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인권단체 상근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강좌」 운영

### 2.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강화

- APF 의장직 적극 수행
  - APF 연례회의 참가(8월), 유엔 아·태지역 인권보호증진 워크숍 의장연설(5~6월) 등
- ICC에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 유엔 ICC 연례회의 참가(4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후속작업 추진 등
- 유엔, NGO 주최 국제회의의 참가 다양화
  - 유엔 인권위원회(4월), 조약감시기구회의, 세계사회포럼 등
- 국제인권법 관심제고 및 이행관련 사업 강화
  -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설서 발간, 연구용역 실시 및 세미나 개최

## 6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체계화

###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분야 인권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통합학급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 중·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2종)

###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경찰·검찰·교정직 등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과정 운영
- 군인 및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생 등록·학습·평가 등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구축
- 국외 인권교육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자료수집·번역 등

### 4. 국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 일반국민에게 인권(차별)이라는 주제가 폭넓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 2005 인권영화 및 인권만화, 인권사진집 제작
  - 월간 『인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사례집 발간

# 인 권 정 책 분 야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 ▣ 인권상황 실태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 개정 이유

-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 위에서 수행토록 하고,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조사권 강화 등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하려는 것임

### 2. 개정(안) 발의 현황

#### □ 의원 발의(안) : 5개

- 최재천 의원안('04.12.10 발의, '04.12.28 법사위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조직, 인사, 예산 등)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정부의 법령·정책 등)
  - 조사권 강화(수사중인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조건 완화, 재정신청권, 조사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조사중인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등)
  - 진정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시 시설관계자 입회 금지, 진정함 설치 의무화, 재심절차 규정 등)
  - 권고의 실효성 제고(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피권고기관의 권고이행여부 통보기한 60일 설정 등)
  - 지방사무소 설치
  - 의문사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 규정 신설
  - 퇴직 인권위원 공직취임 제한규정 삭제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정부안과 비슷하나, 정부안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등
- 유선호 의원안('04.7.27 발의, '04.12.28 법사위 상정후 소위원회 회부)
  - 지방사무소 설치(최재천 의원안 및 정부안에 이미 반영)
- 정성호 의원안('04.8.13 발의, '04.12.28 법사위 상정후 소위원회 회부)

- 퇴직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 규정 삭제(최재천 의원안 및 정부안에 이미 반영)
- 이은영 의원안('05.2.2 발의, '05.2.18 법사위 상정후 소위원회 회부)
  -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 인권위 단일화(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 등)
    - ※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노회찬 의원안('04.11.22 발의), 정성호 의원안('05.2.1), 이은영 의원안('05.2.2) 등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
  - 이 중 이은영 의원안은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개인정보특별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인권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회찬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
- 김애실 의원안('05.3.2 발의)
  - 인권위원중 남녀구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에 소위원회 형태로 성차별시정위원회를 별도 설치

#### □ 정부(안) : 2005.2.17 국회 제출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를 위한 법개정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사무소의 설치 근거마련
  - 조사대상에 성희롱 행위 명시
  - 조정위원회를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구성하고, 진정사건에 대하여 합의권고 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기능 활성화
  - 기타 용어정리 등
    - ※ 차별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와 관련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인권위법 개정과 동시에 개폐절차 진행('05.3.2 국회 통과)
    - ※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부에서 개정 검토중

### 3. 향후 추진일정

- 4월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하여 심의 예정

- 의원 발의(안), 정부제출(안) 등 총 6개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인권위의 입장 정리
  - 심의과정에 위원회 입장 적극 개진

#### 4. 논의 사항

- 차별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따른 인권위 시스템 변화
  -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하고, 조정위원회를 분야별로 설치하는 등 인권위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특히, 김애실 의원 등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차별시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 지금까지 11인으로 구성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차별시정을 담당해 왔으나, 성차별시정기능이 인권위로 통합된 후에는 3-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성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차별시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차별시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를 인권위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회찬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요한 법령·정책 등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됨
  - 그러나, 법부부 등 일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정책의 입안·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인권위가 비록 독립기관이기는 하나,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
- 지방사무소의 설치·운영
-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조사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피진정인 출석요구 조건 완화, 재정신청권 등
- 인권위원의 남녀 성비 구성
  - 현행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중 여성은 4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김애실 의원등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적절한 성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 기타 추가 개정 사항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개의 개정안에 미반영된 사안으로서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 1. 사업 목적

#### ○ 일반적 목적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2007-2011까지 국가가 실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정부(국무총리)에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권고안 작성

#### ○ 구체적 목표 (산출물)

-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 상황 전반을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 문제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과제 도출
- 핵심정책과제별 목표에 따른 단위정책과제 권고안 개발
- ※ 관련 부처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정책 수립·시행

### 2. 사업 개요(주요 사업내용)

#### ○ 국내 인권 상황 분석

- 분석을 위한 기본 틀 수립
  - NAP 수립의 범위 설정 : UN의 NAP handbook을 참조
  - 인권상황 분석을 위한 범주화 : 총론, 자유권, 사회권,
  -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국제적 활동, 시민사회활성화
- 범주별 인권상황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범주별 인권 문제 파악

#### ○ NAP 주요 내용 구성

- :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시민사회활성화, 국제적 활동 등 총 6개 분야
- 시민·정치적 권리
  - :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정보인권, 참정권, 생명권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 사회보장권, 주거권, 노동권(비정규직 포함),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환경권
- 사회적 소수자
  -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인, 아동
- 인권교육
  -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이행을 목표로 함.
  - 각급학교 인권교육 강화,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 교육, 일반 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연구기반 · 법제 강화 등 인권 교육 인프라 구축
- 국제적 활동, 시민사회 활성화
- 필요 과제 도출
  - 상황분석에서 파악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 2011년까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정책과제 도출
- 단위정책과제 선정
  - 핵심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위 과제 수립
- NAP 권고(안) 보고서 작성
  - NAP 권고(안) 분야 및 영역

### 3. 추진 현황

관련조직 구성, NAP 권고안 내용 구성, 자료 수집 및 번역, 쟁점 정리 표 작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관련 인권단체 의견 수렴, 홈페이지 개설 등

- 관련 조직 구성

: NAP 추진기획단, NAP 실무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NAP 추진기획단

· 2004. 2. 24. 발족

· 국가인권위원회(단장 1인, 간사 1인),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영역별 분과 구성 / 분과회의 개최

(총괄,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 NAP 작성 추진 기본방향 제시, 내용 구성 논의,

(월 1회 정례회의 개최, 현재까지 13차 회의 개최)

- NAP 실무팀

· 2004년 인권정책국장외 18인 → 2005년 팀 정비, 8인

· 국가인권위내 NAP 업무 담당 인력

· 자료수집 및 쟁점정리 초안 작성, 연구용역 발주 ·

관리 · 검수, 인권단체 의견 수렴, 집필 등 업무 담당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구성

· 인권위 사무총장과 인권정책국장,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국  
장급 공무원 64명 및 전문가 17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

· NAP 수립과정에서 NAP와 관련하여 행정부처와의 공식적 협의  
기구임

○ 자료 수집 및 번역

- 자료 수집

·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대안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최근 5년간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  
료, 신문기사 수집

· 정부부처의 중장기기본계획, 정책계획 수집

- 자료 번역

- 유엔 NAP 안내서, 15개국의 NAP 및 13개국의 6대 인권협약 보고서에 대한 유엔권고 번역
- 쟁점 정책과제 정리
  - 인권관련 정책과제 목록 작성
  - 현행 법령과 정부정책, 전문가(학계, 시민사회) 제안, 유엔 권고, 외국 사례와 국제협약, 국제기구 권고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
  - 현행 법·제도·정책 등의 문제점과 제시된 제안들을 실무진의 주관적 판단 없이 전부 망라하여 정리
  - 정리된 쟁점 정책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추진기획단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 인권단체 의견 수렴
  - 2004. 7. 쟁점정책과제에 대해 관련 인권단체의 서면 의견 수렴
  - 총 86개의 인권단체에 의견 요청, 총 31개 단체의 의견 접수
- NAP 관련 연구 용역 수행
  - NAP 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 실시
  - 총 25건 발주  
(자유권 8건, 사회권 10건, 사회적 소수자 7건, 인권교육 1건)
  - 완료된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무팀 및 추진기획단 위원들 검수
- 홈페이지 개설
  - NAP 홍보와 국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 배너 연결
  - NAP 소개, FAQ, 관련자료, 국민제안, 토론방 등으로 구성됨.
- 권고안 초안 집필팀 확정
  - 추진기획단 위원 집필을 원칙으로 함
    - 전체총론, 자유권, 노동권, 교육권, 여성, 장애인, 아동, 학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 미집필영역은 인권위 실무팀이 집필함.
    -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환경권,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

인, 공공기관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시민사회  
화, 국제적 활동

활성

#### 4. 향후 추진일정

- 권고안 초안 작성 4월말
- 인권단체간담회, 공청회 3 ~ 5월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4 ~ 5월
- 전원위 상정 및 권고안 확정 6월
- 권고 상반기
- ※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2001.5.21.)에 따라  
2006.6.30 까지 유엔에 보고 예정

#### 5. 논의 사항

1) NAP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의 의견 수렴 등 협조체계 구축과 계획

##### □ 2004년 NAP 관련 인권시민단체에 서면의견 요청

- NAP 쟁점 및 정책과제 목록 작성단계에서 관련 인권시민단체에게 서면의견을 요청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함
- 총 86개의 인권시민단체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31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함

##### □ 2005년 NAP관련 인권시민단체 참여 계획

- 2005. 3. 권고안 시안 집필중에 영역별 관련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 (별지) 영역별 간담회 일정표
  - 관심 영역 참여하여 의견 개진
- 권고안 시안 작성 후 4월중 전체 시민단체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초안 작성
- 아울러,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된 초안으로 영역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수정 보완할 계획임

2) NAP에서 다루어지는 사회권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 NAP 사회권의 주요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권, 주거권, 노동권(비정규직 포함),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환경권으로 영역을 선정 하였음

#### □ 추진현황

- 2004년 각 영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추진기획단 위원중 김선수 변호사, 김연명 교수, 이광택 교수, 이양희 교수를 사회권 분과위원으로 하여, 연구진과 사회권 정책과제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 2005년 1월 사회권 영역에 대해 이광택 교수와 인권위 집필팀 직원들이 시안을 집필중에 있음

### 3) NAP 향후 일정 진행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언급 요망

#### □ NAP 향후 일정(안) 은 다음과 같음.

- 추진기획단 위원과 내부 집필팀이 3월말까지 권고안 시안을 작성한 후, 초안에 대해 3, 4월에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
- 아울러, 4월 이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행정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NAP에 포함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6월내에 권고안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권고할 예정임.

## ▣ 인권상황 실태조사

### 1. 사업 목적

- 인권상황 파악 및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정책권고 및 조사·구제의 판단근거로 활용
- 방문조사나 직권조사의 한계 보완

### 2. 사업 개요

- 1년 단위로 실태조사 과제 선정, 실시
- 단위 과제별로 외부 연구기관(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으로 사업 실시
- 필요시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 실시

### 3. 추진 현황(실적 포함)

- 총 77개 과제 실시(2002-2004년)
  -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등 총 29개 과제 수행
  - 2003년 '사회보호법관련 인권실태조사' 등 총 23개 과제 수행
  - 2004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기초현황 조사' 등 총 25개 과제 수행
- 2005년 1차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미학령기 아동의 보육현황 실태조사' 등 7개 과제 실시 예정

#### 4. 향후 추진일정

- 과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수렴
  - 3월 21일까지 과제제안 접수
  - 향후 연중 과제제안 접수 방안 마련 중
- 4월 05년 1차 실태조사 7개 과제 사업자 선정 완료
- 5월 05년 2차 실태조사 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완료

#### <별첨>

- 과제제안서 양식
- 2002 ~ 2004 실태조사 목록

#### 5. 논의 사항

##### □ 인권단체, 외부전문가로부터 과제제안

-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빈번하게 접수되는 진정사안, 정책검토가 필요한 현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자체 선정함. 향후 인권단체, 일반시민,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과제 선정 시 참고하고자 함.
-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 업무와의 연관성, 인권문제로서의 보편성, 독자성(중복성 배제)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함.
- 향후 위원회에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제안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실시할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인권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고 있는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전망하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가 있으면 본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3월 21일(월)까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최영준  
전화 02-2125-9744

제출 방법: 팩 스 02-2125-9747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이메일 yjunchoi@humanrights.go.kr

주제		
제안자	단체명	
	담당자	
	주소	
	전화	TEL : FAX :
	E-mail	
제안일	2005. . .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되는 인권상황·인권문제와, 해당 실태조사의 활용방안·의의 등을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주요 내용

※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기 타

※ 그밖에 해당 실태조사와 관련해 제안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별첨>

##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목록 (2002~2004)

□ 2002년도(29개 과제)

연 번	용 역 명
1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5	구급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6	군대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7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군내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중심으로 -
8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9	소년사범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10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11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12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13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14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15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16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17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18	구급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19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20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조사
21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22	한국 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23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24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25	부랑인 시설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26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가정폭력법, 특례법)
27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청소년보호법)
28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노동관련법)
29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아동복지법)

□ 2003년도(23개 과제)

연 번	용 역 명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5	차별관련 법령실태조사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9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 상황 실태조사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12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5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18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19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20	연령, 학벌, 학력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22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 2004년도(25개 과제)

연 번	용 역 명
1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현황조사
2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4대 사회보험) 기초현황조사
3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4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5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 기초현황조사
6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조건, 기업복지) 기초현황조사
7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권 기초현황조사
8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9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동권 기초현황조사
10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11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12	집회/결사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13	양심/종교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14	언론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정책적 쟁점들에 관한 연구
15	피의자, 피고인, 증인, 참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16	인터넷 및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7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8	외국인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개발을 위한 연구
20	원폭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
21	문화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22	차별금지법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
23	환경권분야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24	성적소수자와 인권현황
25	국민 인권의식 조사

# 차별조사 분야

-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준비
- ▣ 차별현장 방문 및 차별사안 발굴

##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준비

### 1. 사업목적

-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 위에서 수행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준비

### 2. 사업 개요

- 고용차별 및 성희롱 관련 업무에 대비, 조사관의 지속적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여성부에서 처리 중인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인수
- 법 개정예 따라 설치하게 될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력풀 등 마련

### 3. 추진 현황

- 여성부 등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개정(안) 국회제출('05.2월)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05.3.2.)
- ☞ '05. 6. 1.부터 여성부에서 조사 중인 성희롱 사건을 포함, 향후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됨

### 4. 향후 추진일정

- 조사관 전문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실시 : '05.3.~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인수 : '05.5.
- 법 개정예 따라 설치하게 될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력풀 등 마련 : '05.3.~

### 5. 논의 사항

- 조사관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 프로그램 및 내용 등
-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 등 논의, 추천

## ▣ 차별현장 방문 및 차별사안 발굴

### 1. 사업목적

- 소극적 진정사건 처리를 지양하고, 관행화된 차별행위 현장방문과 조사를 통하여 차별행위의 적극적 예방 및 시정

### 2. 사업 개요

- 사유별 차별현장 파악 및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우선과제 선정, 조사

### 3. 향후 계획

- 차별조사국 직원 간담회 개최 : 3.15. 예정(제3소위위원장 참석)
- 직권조사 설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4월
- 사유별 차별현장 방문계획 수립 : 4월
  - 방문기관, 일정 등
- 직권조사 사항 발굴 및 조사 : 4월~

### 4. 논의 사항

- 사유별 관행화된 차별과 차별현장에 대한 인식공유
  -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나 차별이 만연한 곳 등
- 직권조사 설계를 위한 간담회 및 차별현장 방문에 대한 의견
  - 어느 정도까지 단체의 협조가 가능한지?
  - 단체에서 바라는 차별행위 구제 등

# 인권침해조사 분야

## ■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 각하사건 처리절차 개선
- 기각결정문 작성 간소화 방안

#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 I. 검토 배경

- 진정사건 지연 처리로 인한 진정인 불만 증대
  - 조사구제규칙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하여 5개월 이상 소요
- ⇒ 우선적으로 각하사건 처리절차 개선 및 기각결정문 작성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 단축 필요

## II. 각하사건 처리절차 개선

### □ 현행 각하사건 처리 절차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19조에는 각하사건의 경우 목록만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소위 일부 위원의 요청으로 해당규칙이 개정된 2003.6.2 이후에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있음

#### < 각하사건 처리 절차 >

-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 작성(조사관) → 과장 결재 → 소위원장 결재 → 소위 상정, 의결 → 관계자 통보(의결서 작성 없음)

### □ 안건 상정에 따른 문제점

- 소위원회 의결을 위한 안건 작성, 상정 대기로 사건처리 지연
- 과도한 조사력 투입으로 다른 사건 처리도 지연시키는 효과

#### ※ 타기관 사례

- 공정위 :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과장급)이 결정
- 고충위 :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국장 결정

### □ 개선 방안 : 소위원회 의결없이 상임위원 결정으로 종결

- 다만, 법제32조제1항제3호(피해자 조사 불원), 제6호(가명, 익명 진정), 제8호 (진정 취하), 제9호(반복진정) 등 단순 명백한 사건은 국장

전결 검토

□ 기대 효과 : 처리기간 대폭 단축 및 조사관 업무량 경감

- 현재 각하사건이 전체 진정의 70%를 상회하므로 커다란 업무 간소화 효과 기대

□ 논의 사항

- 각하 결정을 상임위원(국장)이 할 경우 문제점 발생 여부

### III. 기각결정문 작성 간소화 방안

□ 관련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2항(진정의 기각)
  - 진정기각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만 통보
  - 의결서는 법상으로는 필요적 작성 문서 아님
- 다만, '조사구제규칙' 제35조제1항(의결서 작성 및 통지)에,
  - 기각결정시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 '각하·이송'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의결서 작성
- 인권침해사건은 기각 결정문 작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인권침해 사건은 대부분이 경찰, 검찰, 교도관에 의한 가혹행위, 폭언 등으로 심증은 가지만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기각하는 경우가 많음
  - 진정사건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논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항의하는 사례 빈번
  - 기각결정문은 진정인 보다는 피진정인 입장에서 작성되어 피진정기관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부정적 효과도 있음

□ 개선방안

- 인권침해사건 : : 한정적 의결서 작성 및 안내 회신문 대체

의결서 작성 대상	안내 회신문 대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건</li> <li>- 인권침해의 판단기준 및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건</li> <li>- 인용결정과 병존하는 사건</li> <li>-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서 작성대상 이외의 사건</li> </ul>

※ 의결서 작성 필요성 여부 결정 : 조사관 보고, 소위원회 결정

- 차별사건 : 종전대로 의결서 작성. 다만, 위원회 결정으로 생략 가능

#### □ 기대 효과

- 진정사건 처리기간 단축
- 기각 결정문 작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방지
- 실질적 구제필요 사안에 전념 가능

※ 고충처리위, 공정거래위 등 타 기관도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함

#### □ 논의 사항

- 결정문 대신 일반공문으로 통지할 경우 문제점 발생 여부

# 교육협력 분야

- ▣ 인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 ▣ 지역 인권세미나 개최
- ▣ 제2기 인권교육 추진방향
  1. 인권교육 법제 강화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3. 군대 인권교육 강화

## ▣ 인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 1. 사업 목적 및 배경

- 인권단체 상근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인권관련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및 운동방식과 회원사업 개발 등 교육 수요는 많으나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 2. 추진 현황

- 2003년 : 전주 · 울산 · 부산지역, 총 50개 단체, 111명
- 2004년 : 강원 · 대구지역, 총 42개 단체, 85명

#### ※ 성과와 과제

- 지역 활동가를 위한 인권강좌 개최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나 1회성 교육의 탈피와 심층프로그램(사례 연구, 토론프로그램 등)의 도입 등이 과제로 평가됨

### 3. 향후 추진일정(안)

- 기본계획(안) 수립 및 희망지역 · 분야 파악 : 3월
- 세부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실시 : 4월
-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역이나 해당 분야 단체(장애인분야, 아동분야 등)와 공동 기획하여 시행

### 4. 논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내용 관련
  - 예시 : 헌법 및 인권관련 법제연구,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 분야별 인권현황, case study 및 시민운동 전망 등
  - 시기 및 장소 : 4월 ~ 11월로 하며 개최형태(숙박 및 비숙박)에 따라 장소 조정
- 지역별, 분야별 수요파악 등

## ▣ 지역 인권세미나 개최

### 1. 사업 목적

- 지역 인권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

## 2. 사업배경

- 국가 전반적인 인권현황과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학술 행사 등이 개최되나 지역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학술행사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음
- 지역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비례하여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나 아직 인권운동 차원의 접근이 미약하여 이를 촉진, 지원하기 위함
  -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각종 개발로 인한 철거민, 도시빈민, 환경 문제 등이 인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외국인이주노동자, 아동, 장애인 등 인권문제가 발생

## 3. 향후 추진일정(안)

- 개최 희망지역 파악, 사업추진방안 논의 등 : 3월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시행 : 4월
  - 개최 지역 및 발표분야, 발표자 등

## 4. 논의 사항

- 사업타당성 검토(개최 희망지역 및 실현가능성 등)
- 사업추진 방식, 세부 프로그램 등
  - 위원회와 단체간의 협력방식 등

## ■ 제2기 인권교육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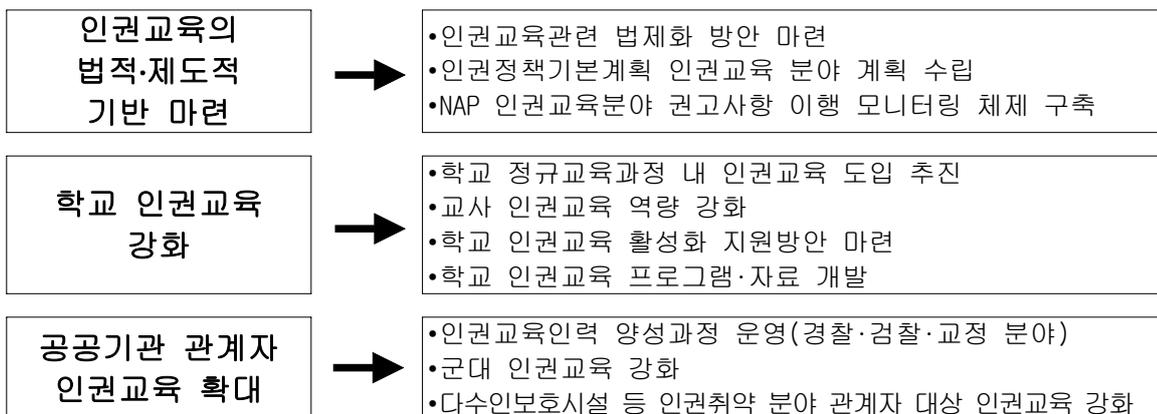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유엔의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NAP) 개발, 인권교육 증진 등을 주요 역할로 규정
- 또한 동 계획은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등을 인권교육 주요 대상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트레이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유엔인권교육 10년의 후속조치로 제59차 유엔총회 (2004. 12. 10.)에서 결의

### □ 추진방향 : 인권교육의 제도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한 분야로 추진 중인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권고, 인권교육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인권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학교 인권교육, 군대 인권교육 등 제1기 인권교육 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교육 확산
-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 및 교수요원에 대한 교육(training of trainer) 강화를 통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구축

### □ 중점 추진과제



### □ 세부 추진과제

#### 1. 인권교육 법제 강화

○ **관련 동향**

- 유엔 차원의 새로운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제59차 유엔총회 결의)의 부속문서(초·중등 학교제도 내 인권교육의 요소들)는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발전이 과제의 성공에 긴요한 요소임을 지적[5-(C) 항]
- 최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 교육위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원영(법사위) 의원실 : 인권교육원법(안) 준비중
  - 정성호(법사위) 의원실 : 인권교육기본법(안) 준비중
  - 유기홍(교육위) 의원실 : 공무원인권교육등에관한특별법(안) 검토중

○ **해외 사례**

- 필리핀, 일본 등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입법을 통해 인권교육의 의무화·제도화를 꾀하고 있음

※ 필리핀, 일본의 인권교육 법제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인권교육 관련 법제 강화의 기본방향과 예상 입법 내용**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
  - 이는 기존 교육체제와 관행 속에 교육주체의 하나로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인권의 가치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인권교육의 체계화, 지속적 추진을 가능케 하는 교육기구의 설립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 소요 인력, 예산, 시설 등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을 법제화함
  
- 이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사항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한 규정
  - (가칭)인권교육조정협의기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 사회전반의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민관 공동 협의
  - 설립에 관한 사항
  - (가칭)인권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 연구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향후 계획(2005년)**

- 인권교육 관련 법제 해외사례 조사
- 인권교육 법제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추진 방향**

- 인권위법 제26조 제2항 및 유엔 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에 의거, 인권교육의 내용을 현행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인권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인권교육 실천의 이론적 기반 정립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의 제안에 의거, 인권교육 분야의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인권교육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 지원

○ **사업 내용**

-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추진을 위한 협의 강화
  - 협의체 구성 등 협의 제도화 방안 마련
  -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목에 인권 내용을 체계적 통합하고 재량 및 특별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함
  - 예비법조인 및 교사를 양성하는 법과대, 사범대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권강좌 개설 추진
- 교사 인권교육 역량 강화
  -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연수기관과 협의하여 교원의 각종연수(직무연수/ 자격연수)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위원회 주관 교원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및 관련대상 집단(교

- 사교육자, 교과서 연구, 집필자 등) 워크숍 실시
- 각급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인권교육연구 협의체 구성 등 인권교육 인적 인프라 조성
  - 인권교육 관련 연구소 및 연구모임 등 지원
  -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우수교사 발굴과 인권교육 선진국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을 통한 물적 기반 조성
  - 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 내 인권 내용 도입의 체계화 및 확대
  - 각 학교에서 인권문제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방안 마련
  - 새로운 인권교육지도자료개발
- **향후 계획(2005년)**
  - 중·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원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인권교육실천사례 및 인권문예작품 공모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 및 전국적 전파
  -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 관련 토론회 및 연수

### 3. 군대 인권교육 강화

- **추진 배경**
  -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군대를 인권교육 대상집단으로 포함시켜 군대 인권교육을 강조
  - 제1기 위원회가 중점을 두어 추진했던 경찰·검찰·교정공무원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됨에 따라 제 1기 위원에서 미흡했던 군대 등의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그동안 인권교육에 소극적이었던 군대 내부적으로도 육군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 ○ 경 과

- 군대 인권강좌 개설을 위한 노력
  - 육·해·공군 대학에 인권교육실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군 대학 방문(2002. 11.)
  - 각 군 인권교육 운영실태 조사 및 군대 인권교육 실시 협조 공문 발송(2002. 11. 25.)
  - 국방연구원의 국방부 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대 인권개선 관련 연구실무자와 실무협의 진행(2004. 11.)
- ⇒ 군대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군대 내 인권교육에는 소극적임
  
- 군대 인권교육 자료 개발
  - 군대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군대와 인권」 개발(2002년)
- 군대분야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강의 지원
  - 군대분야 인권교육 강사 : 11명(법조계-8, 학계-3명)
  - 군대분야 강사단 강의지원 : '03년 : 2회, '05년 : 1회

## ○ 사업 내용

- 국방부와의 추진협의체 구성 등
  - 3군 사관학교 등 군대 장병 양성 및 보수 교육기관의 각 과정에 인권과목 필수화 및 군대 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등 군대 내에서의 종합적·체계적 인권교육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약체결
- 군대 인권교육 인적기반 구축
  - 인권전문상담실 담당자 및 교육담당자 대상의 연수과정 운영
    - ※ 인권전문상담실은 육군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육군에서 각 신병교육기관과 육군 예하부대에 설치 예정
  - 군대 인권교육 전문가 발굴을 통한 인권교육 강사풀 구축
- 군대 인권교육 물적기반 구축
  - 교육대상별(간부용, 사병용 등)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 교육대상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직위에 따른 적절한 인권교육이 가

능하도록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개발하여야함을 언급(2002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10쪽)

- 군대 자체적으로 교육자료 개발 시 인권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국방정책연구 2004년 겨울호 기획논문(장병 인권 논의의 쟁점과 발전방향, 김광식)에서도 군 인권지침서 제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내 관련 부서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군대 인권교육 모니터링

- 군대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 향후 계획(2005년)

- 군대 인권교육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3월 말
-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교육담당자와의 협의 간담회 실시 : 4월
- 인권전문상담실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상반기
- 군대 인권교육 모니터링 실시 : 상시

## □ 논의 사항

### 1. 인권교육 법제 강화

#### ○ 법제 강화를 위한 접근 방향

- 교육기본법 개정, 인권위법 및 시행령 개정, 인권교육 별도 입법 방안 등

※ 인권교육 법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및 장·단점 비교는 붙임자료 참조

#### ○ 법제 강화를 위한 추진 절차와 방식

- 인권교육 법제 강화 추진팀(task force team) 구성 방식 및 활동 범위

· 구성 : 법학자, 인권교육전문가, 인권운동단체 활동가 등

· 활동범위 : 간담회 개최, 자문, 법안 구성 기초 작업(draft)

※ 추진 절차와 방식 예시는 붙임자료 참조

#### ○ 현재 추진중인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대응

- 이원영(법사위) 의원실 : 인권교육원법(안) 준비중
- 정성호(법사위) 의원실 : 인권교육기본법(안) 준비중
- 유기홍(교육위) 의원실 : 공무원인권교육등에관한특별법(안) 검토중

###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방안

-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인권교육 시수(時數) 확보의 다양한 방법 모색
-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사례 공유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 프로그램 개발 방식 및 보급 방법에 대한 제언
- 강화·확대되어야 할 프로그램 영역 및 대상
-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 방안

#### ○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방향

- 학교에 대해 가능한 지원 방식 모색(인권연구학교 운영 등)
- 인권교육 환경 조성 방안
- 학교폭력, 성교육, 환경교육 등과의 연계 운영 방안

### 3. 군대 인권교육 강화

- **군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단체와의 협력사항**
  - 군대 인권교육 관련 정보 및 인권교육자료 공유 방안
  - 군대 인권교육 강사풀 구성 시 인권단체의 강사 추천 등
- **국방부와의 협약체결 시 포함될 필수 사항**  
 예시)
  - 군대 교육기관의 각 과정에 인권과목 필수화
  - 군대 내 인권전문상담실 담당자 및 교육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군대 인권교육 물적기반 구축
  - 군대 인권교육 모니터링

## 【붙임 1-1】 필리핀 인권교육 제도화

---

### ○ 필리핀에서 인권교육은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무임

#### ※ 1. 새 헌법(1987) 제14조 제3항

-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헌법에 대한 학습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은 ... 인권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 ※ 2. 행정명령 제20호(1986)

- 체포 및 수사 인력의 인권교육 의무화 : 군인, 경찰, 기타 체포 및 구금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교육에 인권을 필수로 포함

#### ※ 3. 행정명령 제27호(1987)

- 인권존중 극대화를 위한 교육
  - 1)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 학습을 포함시킬 것
  - 2) 정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인권지식에 관한 항목 포함시킬 것
  - 3)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 원칙과 관련 법을 강조할 것
  - 4) 필리핀 정부가 비준했거나 당사국인 국제 인권문서를 교육에 포함시킬 것

#### ※ 4. 대통령령 제259호(1995)

- 경찰, 군대, 교도관의 인권교육훈련
  - 1)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훈련 및 재훈련에 인권교육 포함
  - 2) 이들 부처 공무원의 신규 임용, 승진, 전보에 있어 인권과정 연수를 필수화

### ○ 필리핀의 경우 단계별·대상별 직무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가치로, 지식으로, 업무평가 기준으로 통합된 방식임

- ※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정규화를 의미하나 그 방식과 수준은 다양함. 지식전달 위주의 1~2시간 강연이 정규과정에 필수로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인권과정이 개설될 수도 있음. 어떤 경우든 그것이 인권 관련 특수직무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

무연관성 확보가 늘 과제로 부각됨

- ※ 공공안전대학에서 만난 교육 책임자들은 “필리핀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려는 경찰이라면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함. 제도화의 완성형에 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음

## 【붙임 1-2】 일본의 인권교육 법제와 기구

---

- 인권교육및인권의식개발추진에관한법률 제정(2000. 12.)
  - 목적과 정의,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과 의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연례보고, 재정 등 총 9개 조항
  
- 인권교육개발추진센터 설립(1997. 4.)
  - 법무성, 문부성 및 총무성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재단법인

## 【붙임 1-3】 인권교육 법제 강화 방안 비교

### 가. 법제 강화의 여러 방안

- 현재 제기된 법제화의 방향은 교육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시행령 개정, 별도입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방안	접근	관련 내용
교육기본법 개정	제2조(교육이념) 개정	•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권의식”으로 개정
	주요 교육과제 조항으로 추가	• 제19조~제29조의 구성을 참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것 추가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 법령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강화 개정 • 초·중등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 • 교원연수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 또는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부령 •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연수 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강화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인권위법 및 시행령 개정	국가인권위법의 인권교육 조항 강화 및 시행사항 규정	•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포함
인권교육 별도 입법	인권교육기본법	• 범정부적 인권교육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체제 구축
	인권교육연구원법	• 전담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준비와 교육체제를 갖추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인권교육재단법	• 정부기관의 운영기금 출연, 민간 전문가의 교육내용연구, 교과과정개발 등. 필요한 경우 인권교육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대학 등 인권교육기관 지원

### 나. 법제 강화 방안 비교(2004년 자문 결과 중심)

방 향	장 점	단 점
<p>교육 기본법 등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학교교육)에 인권교육 내용 추가, 제3장(교육의 진흥)에 인권교육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은 그 성격상 국가의 교육에 대한 기본틀을 정한 것으로 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부적절</li> </ul>
<p>국가 인권위 법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가운데 정책, 조사구제 기능은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으나 인권교육 기능은 최소한의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침</li> <li>• 조사구제 관련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교육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인권의 기능상 자연스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에 관한 입법 내용이 새로운 조직과 예산소요를 유발하는 수준일 경우 별도 입법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함</li> <li>• 국가인권위원회법령에 다른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과정에서 다른 국가기관의 비협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li> </ul>
<p>별도 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li> <li>• 조직법적 성격이 있는 국가인권위법보다는 별도 입법을 통해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타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법령 제정에 대한 거부감, 법령 제정에 따른 조직 구성 및 그에 따른 예산 문제가 개정의 경우보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음</li> </ul>

## **【붙임 1-4】 인권교육 법제 강화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예시**

---

### 가. 인권교육 법제 강화 추진팀(Task Force) 구성 및 활동

- 법학자, 인권교육전문가, 인권운동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 관련 그룹들과의 집담회 개최, 자문, 법안 구성 기초 작업 진행

### 나. 인권교육 법제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교육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정당, 국제기구 대표 등을 토론자로 하는 공청회 개최
- 필요에 따라 2회 이상 개최

### 다. 입법 활동

-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

## **【붙임 2】 제1기 인권교육 성과와 과제**

### 추진방향

- 전략분야를 법집행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에 주력한 한편
- 종합적인 국가인권교육 5개년 기본계획 개발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 학교인권교육 시행에 앞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조성도 병행함
- 한편 trainer를 위한 training 전략으로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도 동시 추진

## □ 추진실적

	물적 인프라 구축		인적 인프라 구축	
	교육자료 개발	인권강좌 운영	강사 훈련	교육 실시
법집행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길라잡이-경찰편</li> <li>• 인권길라잡이-교정편</li> <li>• 인권길라잡이-검찰편</li> <li>• 행정과 인권</li> <li>• 인권교육 표준교안</li> <li>• 경찰인권교육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인권강좌 개설 (법무부, 경찰청 연수기관)</li> <li>• 국제인권법과목 재개설 (사법연수원)</li> <li>• 인권위 개발 교재 자체 교육 및 교재개발시 활용 (경찰청, 법무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회)</li> <li>• 인권교육강사 워크숍 실시(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65회/17,417명</li> </ul>
학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li> <li>•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의 이해</li> <li>•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li> <li>• 인권동화 및 매뉴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연수방향에 인권교육 지도능력 제고 반영</li> <li>• 대학 인권교육 현황조사 및 강좌개설 요청</li> <li>• 인권연구학교 운영</li> <li>•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회)</li> <li>• 워크숍 실시(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직원 대상 인권 특강 등</li> </ul>
인권교육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 계획 관련 연구</li> <li>• 인권교육현장사례집</li> </ul>			

## □ 성 과

### ○ 법집행공무원 관련

- 검사 등 검찰관련 직무교육(법무연수원)에 인권강좌 정규화 및 법무부 자체적으로 '수사와 인권' 등 인권교재시리즈 개발
- 경찰청 자체에 '인권보호관' 설치 및 경찰 직무관련 연수과정에 인권강좌 정규화

- 사법연수원에 국제인권법 강좌 개설

### ○ 학교 인권교육

- 학교정규교육과정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기 위한 인권교육과정 개발
- 교원연수방향에 '인권교육 지도능력 제고' 반영

### ○ 국가인권교육종합 5개년 계획

-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 목표, 대상집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국가인권교육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시 토대가 됨

### ○ 인권교육 강사 연수

- 법집행공무원 등에 대한 1차적 인력풀 형성

## □ 과 제

### ○ 법집행공무원 분야

- 자체 기관 내 인권교육방법론에 기초한 강사인력 부족

### ○ 학교 교육분야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기 위한 제도적 가시화 필요
-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교육강좌'의 정규과목화 개설 필요

### ○ 국가인권교육종합 5개년 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책협의 필요

⇒ 종합적으로 인권교육의 전면적 확산과 더불어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법제화 필요